

64.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2년 9월 2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(도시주택국장)
- 회부일자 : 2022년 9월 6일
- 상정일자
  - 대구광역시의회 제295회 정례회

제2차 건설교통위원회(2022년 9월 20일) : 원안 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권오환 도시주택국장)

### □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('22. 7월)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를 폐지하고, 그 기능을 같은 조례에 따라 구성된 감사단을 활용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·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## □ 주요내용

-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의 업무 추가 신설(안 제8조)
  -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선정 등 평가 심의
-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시 평가 방법 변경(안 제21조)
  -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심의→감사단을 활용한 평가단 심의
-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지원 심의 방법 변경(안 제22조의2)
  -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심의 → 감사단을 활용한 평가단 심의

## 3.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김건호)

-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같은 조례에 규정된 감사단을 활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·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임.
- 안 제8조제5호에서 같은 조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및 자문을 위해 설치한 감사단의 업무에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심의,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선정 심의,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선정 심의를 추가하였음.

- 이는 기존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감사단을 활용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의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·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.
- 다만,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지침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는 통·폐합, 3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폐지, 1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위원회 활성화 또는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 매년 1~2회정도 개최되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위원회의 폐지에 앞서 위원회 활성화 및 정비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.
- 또한, 감사단이 기존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감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<p>○ 기존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감사단을 활용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는 이번조치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감사단 구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.</p>	<p>○ 감사단 인력풀 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</p>

## 5. 토론요지

- 없음

## 6. 수정안 요지

- 없음

## 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위원 전원 찬성)

## 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